

19.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101호 1999. 2. 5

개 정 이 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개정(1999. 1. 18, 법률 제5628호)으로 광역시의 일부 동지역이 동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 령에 의한 사업시행승인 등의 업무주체에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농어촌주택조합의 구성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제도와 토지형질변경행위 등에 관한 시장·군수의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함(령 제2조 및 현행 제18조 삭제).
- 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던 것을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하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령 제6조).
- 다. 증전에는 조합주택 건설예정지에 거주를 목적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세대주에

대하여는 그 지역이 본적지 또는 연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적지나 연고지에 관계없이 조합주택 건설예정지에 거주를 목적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는 농어촌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령 제9조제1항).

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을 금지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현행 제10조제3항 삭제)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을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제4호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4조 본문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개선사업의 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선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개선사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행자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3호중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있는 조합주택”을 “조합주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영에서 “조합주택 건설예정지”라 함은 당해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시 명시된 사업계획 대상지역이 위치한 읍·면·동지역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제2항중 “시

장·군수는 내무부령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중 “시장·군수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